

# 工業所有權情報의 特徵과 現況

## 〈Ⅳ〉

### 成 基 泰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責任研究員〉

一承 前一

#### 3.1.2. 無審査制度採用國家

無審事主義는 申告主義라고도 하는데 일단 適法으로 登錄을 申請하면 內容의 實質的인 審査를 거치지 않고 特許를 賦與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 申請(opposition)을 하든가 또는 無效訴訟에 의하여 特許紛爭이 惹起되었을 때 비로서 實質的 要件의 存否을 검토한다. 이 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代表的 國家는 벨기에이며 出願後 約 半年 以內에 特許가 公開되기 때문에 特許情報의 速報性에서 매우 重要하다(表 29).

#### 가. 벨기에

##### 1. 特許節次

特許出願을 하게 되면 月 2회로 나누어 特許된다. 每月 15일까지 出願된 것은 方式審査後 普通 그 月의 月末에 特許權이 賦與되며 16일부터 月末까지의 出願은 그 翌月의 16일에 權利가 賦與되는데 特許가 되더라도 3個月間은 秘密로 하게되며 特許登錄日로부터 3個月 1日을 經過한 날에 公開된다. 즉 特許賦與日로부터 3個月 後에 特許出願의 카피가 圖書館에서 閱覽되게 된다.

예를 들면 3月 4日付의 出願은 3月 31日에는 特許로 되고 6月 30日에는 公開되는데 빠르면 3個月半 늦어도 4個月半에 公開된다.

公開延期를 出願人이 希望하였을 경우는 出願日로부터 6個月後에 登錄하게 되며 同時에 公開된다.

##### 2. 情報發生과 그 資料

公開되면 「特許明細書」(Brevet d'Invention)가

發行되는데 이것은 出願書類의 寫眞카피이다.

特許賦與日로부터 3個月後(實際는 이보다 훨씬 늦다)에 「特許公報」(Recueil des Brevets d'Invention)가 發行된다.

〈表 29〉 無審査를 採用하는 國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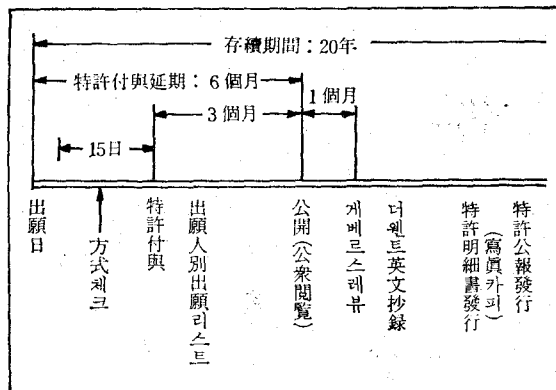
1982年 10月 現在

國 名	과 리 條 約	特 許 法	出 願 人 의 資 格	審 査	新 規 性 判 斷 準	存 續 間		出 願 公 告 期 間 (月)	實 施 義 務 年	P C T	E C	公 開 制 度	審 査 請 求	
						起 算 日	延 長 期 間 (年)							
벨기에	○	○	◎	×	□	出	20	無	無	1	◎	◎	×	×
스페인	○	○	◎	×	○	特	20	無	無	3	×	×	×	×
이태리 (1979年)	○	○	◎	×	○	出	20	無	無	3	○	○	○	×

#### ◎ 特許明細書(Brevet d'Invention)

1950年(特許 493079)부터 印刷 發行된 것으로 印刷能力등의 理由로 特許 605664番부터 出願書類의 寫眞카피를 特許明細書로서 發行하기 시작

〈表 30〉 벨기에의 特許情報發生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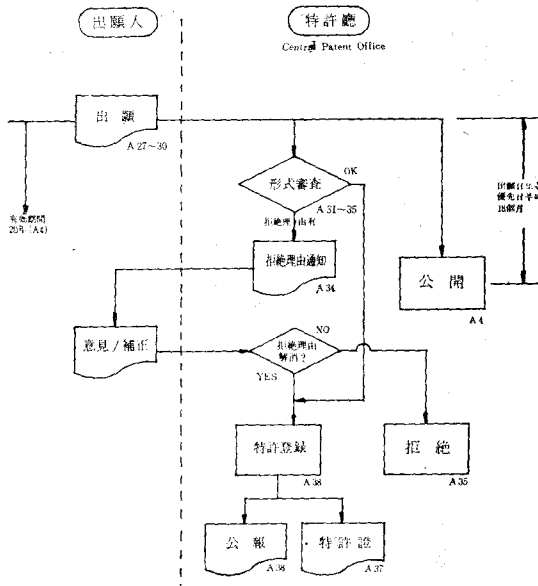
하였다. 表 30은 特許資料을 中心으로 한 特許節次이다

(表 31) 이탈리아의 特許節次

나. 이탈리아

1939年 6月 29日 國王布告(Royal Decrees) 第 1127號로 特許法이 公布되었고 1979年 8月 22日 EPC와 調和를 도모기 위하여 新法을 改正·施行하였으나 아직 無審査制度를 채택하고 있다(表 31). 出願後(또는 優先權主張日) 18個月後에 出願된 特許가 公開되는데 公開된 후 몇년 후에 特許廳公報(Official Gazette)가 發行된다. 公開後 出願書類들을 곧 寫眞 카피로 入手할 수가 있고 특히 릴(Reel)當 150件的 特許明細書가 있는 마이크로필름도 구할 수가 있다. 特許番號는 一連番號로 되어 있고 現在 100,000을 훨씬 넘었다.

出願番號는 各地域마다 주고 있기 때문에 一定치 않다.



(表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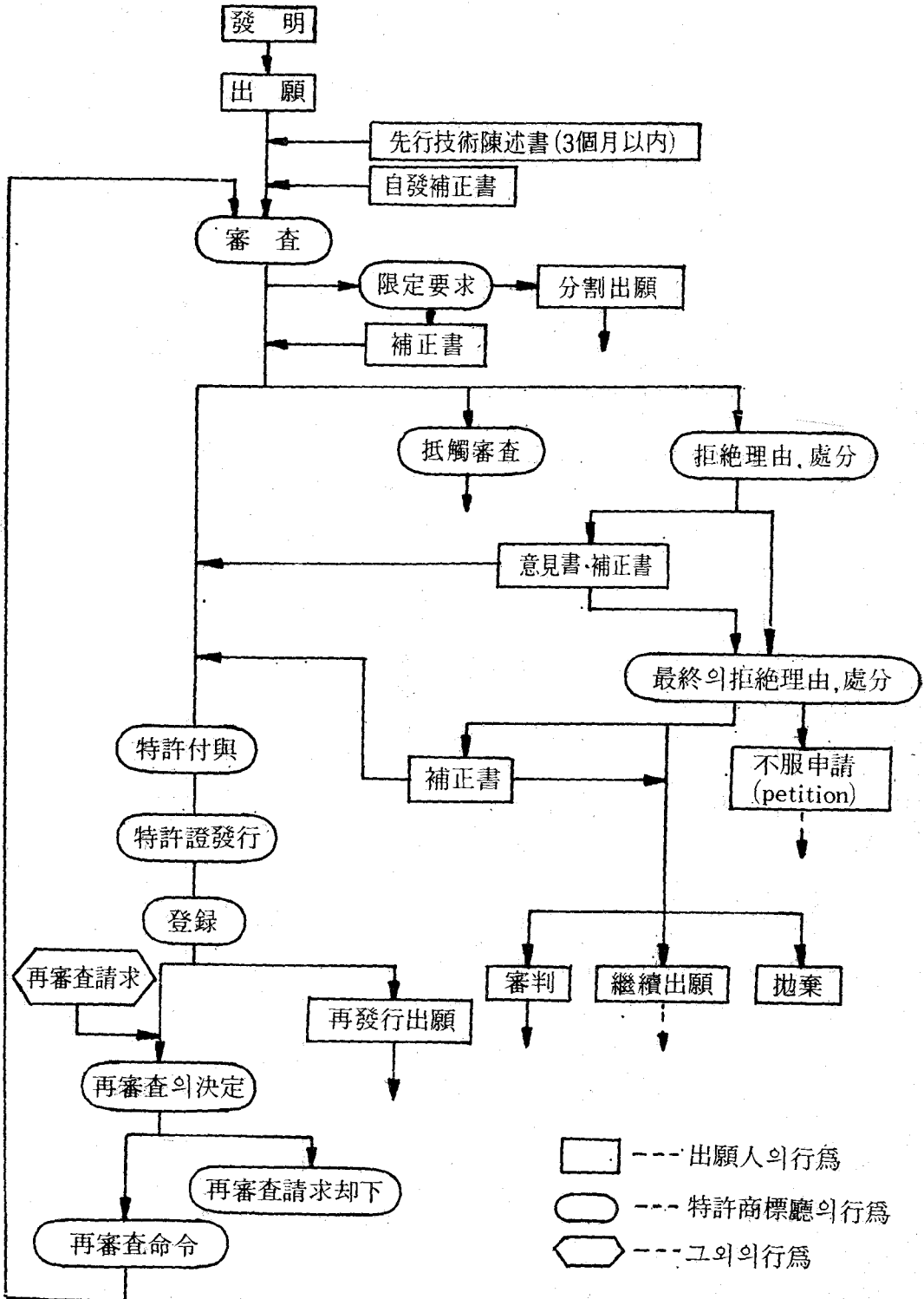
上記以外の 國家

1982年 10月 現在

國名	專利條約	特許法	出願人의 資格	審査	新規性 判斷	存續期間			特許의 對象으로 되지 않는 發明	異議申請(月)	實施義務(年)	P C T	E P C	備考
						起算日	期間(年)	延長(年)						
美國	○	○	○	○	□	特	17		原子兵器에서 特殊核物質, 醫藥, 飲食物	無	無	◎	—	알래스카, 하와이, 파나마 등도 効力延長은 議會의 承認을 얻는 경우에만
캐나다	○	○	◎	○	□	特	17			無	3	○	—	
대만	×	○	◎	○	□	出	15	有		無	3	×	—	
필리핀	○	○	○	○	□	特	17	無		無	3	×	—	識物特許
오스트리아 (1977年)	○	○	◎	○	□	公	18	無	醫藥, 飲食物, 化學物質	4	3	◎	○	
소련	○	○	◎	○	○	出	15	無	組織運營方法 標植建設計劃	無	無	◎	×	發明者證 發見者證
東獨	○	○	◎	○	□	出願翌日	18	無	醫藥, 飲食物, 化學物質	無	無	×	×	經濟特許
스위스 (1977年)	○	○	◎	○	○	出	20	無		3	出願日로부터 4年	◎	◎	
인도 (1970年)	×	○	◎	○	□	特	14		醫藥, 化學物質, 飲食物	4	3	×	—	假名細書制度有 (12個月以內에 完全明細書 提出)
홍콩	○	△	△	△	—	英國特許權의 殘存期間			醫藥, 化學物質, 飲食物		3	×	—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英國特許日로부터 5年以內에 出願
이스라엘 (1967年)	○	○	◎	○	○	出	20	無		3	3	○	—	
이란	○	○	◎	×	○	出	20		醫藥	無	5	○	—	
노르웨이 (1980年)	○	○	◎	○	○	出	20	無	醫藥, 飲食物	3	特許日로부터 3年 出願日로부터 4年	◎	○	
아르헨티나	○	○	◎	○	○	特	5 10 15	無	醫藥, 會計方式	無	2	○	—	

〈表 33〉

美國의 特許節次



### 3.1.3. 上記以外の 主要國

審査主義을 採用하는 國家들인데 어느 國家나 出願된 것이 特許되기까지 數年을 요하기 때문에 特許情報의 速報性의 面에서 볼 때 公開情報 보다는 重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出願件數가 日本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또 出願되고 나서 特許될 때까지 約 1~3年으로 公開情報와의 差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特許情報의 面에서 가장 重要하다 (表 32).

#### 가. 美 國

1790年 4月 10日에 美國最初의 全文 7條의 特許法이 公布되었고 그후 1793年에 第一次改正을 하여 全文 12條의 新法이 그리고 1836年에는 審査制度 및 클레임의 中心限定主義(central definition system)를 採用하는 새로운 法이 公布되어 世界最初의 審査制度을 採擇하는 國家가 되었다.

그리고 1870年에 1836年 以來의 特許法이 大幅 改正되어 從來의 中心限定클레임主義로부터 周邊限定主義(Peripheral definition system)를 採用하게 되었고 1973年에 現行의 特許法이 制定 되었다. 그러나 1973年에 잠시 異議申請制度를 채택(667件으로 出願番號의 머리에 B字를 붙임) 하였고 1981年 7月 1日부터 再審査制度를 사용해 오고 있다(表 33).

現行法의 特色은 ① 先發明主義, ② 審査主義, ③ 周邊限定主義 ④ 抵觸審査 ⑤ 物質特許 ⑥ 植物特許 ⑦ 一部繼續出願 ⑧ 再審査制度 ⑨ 特許維持料金制度 등이다.

#### 1. 特許節次

##### 1.1 方式審査

出願書類는 方式審査되고 만약 違反되게 되면 出願人에게 通知된다. 通知日로부터 6個月 以內에 方式欠缺의 訂正을 해야되며 만약 하지 않을 때에는 그 出願은 拋棄한 것으로 된다. 만약 方式審査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면 出願番號(Serial No.)가 주어지게 된다.

##### 1.2 內容審査

審査官은 먼저 出願에 대하여 新規性(Novelty, A 102), 非自明性(Unobviousness, A 103), 有用性(Usefulness, A 101) 등을 審査하게 되며 이것들을 理由로 하여 클레임을 拒絶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出願人에게 拒絶理由通知(First Office Action)를 하게 된다.

審査官이 非自明性이나 新規性의 缺如를 理由로 클레임을 拒絶하고자 할 때에는 適當한 文獻을 指摘하게 되어 있다. 現在 이 最初 拒絶理由通知는 出願日로부터 8個月程度(繼續出願은 4個月程度)에 되고 있다. 그리고 이 通知가 出願人에게 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答辯書를 特許廳에 提出할 수가 있다(1個月延長可態). 答辯은 書面으로 하며 이 書面으로 現在의 클레임중 어느것을 削除하고 다른 클레임으로 變更하는 補正을 提示할 수 있으며 이러한 書面을 補正書(Amendment)라 부르고 있다.

審査官이 補正書를 受理한 다음에는 그 出願을 檢討하고 다음에 두번째의 通知(Second Office Action)를 하게 된다. 이것은 特許를 許與한다고 하는 許可(Allowance)일 수도 있고 尙클레임을 拒絶한다고 하는 通知이거나 또는 어느 클레임은 拒絶하고 다른 클레임은 許可한다고 하는 通知일 수도 있다. 審査官의 最終拒絶(Final rejection)에 不服일 때에는 審判部(Board of Appeals)에 不服을 申請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繼續出願(Continuation Application)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繼續出願, 一部繼續出願 및 分割出願(Divisional Application)이 있다.

##### ◎ 一部繼續出願(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이것은 出願人의 最初의 出願 A가 係屬中에 있을 때 出願 A에 最初에 記載되지 않았던 내용 즉 新規事項(new matter)을 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出願 A 다음에 신규의 내용 또는 새로운 改良등을 찾아 내어 出願 A의 내용을 擴張하는 意味에서 채택할 수 있는 方策이다.

CIP출원을 한 후는 原出願 A를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CIP출원의 利點이라면 原出願 A와 CIP

출원에 있어서 共通의 要旨(subject matter)에 대해서는 原出願 A의 出願日이 援用되며 CIP의 新規의 要旨를 保護하고자 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CIP의 出願日이 適用되게 된다. 이 CIP出願番號는 特許情報의 檢索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番號이다.

### 1.3. 再審査請求

審査官에 의하여 許可의 通知가 出願人에게 있는 다음 一定期間內에 所定の 特許料를 納付하게 되면 特許가 賦與되게 된다.

이렇게 하여 特許明細書가 發行된 후 새로이 發

主要國의 特許明細書 發行件數(間年)

國名	明細書發行件數(1978年)	抄録 또는 要約		
		첫 페이지	가제트類	그외
아르헨티나	4,000	—	○	—
오스트레일리아*	11,000	—	—	—
오스트리아*	6,000	—	—	—
벨기에	12,000	—	○	—
브라질	10,000	—	—	—
캐나다*	22,000	—	○	—
덴마크	8,000	—	—	—
프랑스*	70,000	—	○	—
西獨*	134,000	—	—	—
東獨	6,000	—	—	—
이탈리아	25,000	—	—	—
日本	320,000	—	—	○**
멕시코	3,000	—	○	—
네덜란드	26,000	—	—	—
노르웨이	6,000	—	—	—
폴란드	8,000	—	—	—
포르투갈	1,000	—	—	—
남아프리카	8,000	—	—	—
소련	45,000	—	—	○***
스페인	24,000	—	—	—
스웨덴	21,000	—	—	○
스위스	14,000	—	—	—
영국	45,000	○****	—	○
미국	70,000	○	○	○
歐洲特許廳	100	○	○	—
PCT(WIPO)	325	○	○	—
韓國	6,600	—	—	○*****

\*PCT Minimum Documentation(PCT의 Rule 34 參照)

\*\*日本發明協會의 PAJ

\*\*\*VINITI發行

\*\*\*\*1977年法에 의한 것만

\*\*\*\*\*韓國特許廳發行的 英文抄文錄

見한 先行技術(Prior Art)을 가지고 그 特許의 有効性의 再評價를 特許廳에 求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는 後述하는 再發行(Reissue) 節次가 있다. 그러나 이 節次는 第3者 또는 特許廳의 自發意思에 의해서도 不可能하고 단지 特許權者만이 可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制度下에서는 어느 第3者가 特定特許의 有効性에 어떻게 關係하고 있고 또는 影響을 받더라도 다음 두가지 方法밖에는 그 特許의 有効性을 論할 수가 없다. 그 하나는 特許侵害를 理由로 訴訟이 提起되었을 때 그 抗辯으로 特許의 無効를 主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自己事業上의 利益이 直接 威脅받는 경우에만 許用되는 確認判決(declaratory judgment)를 求하는 訴訟을 提起하는 것인데 어느 方法이나 巨額의 經費가 所要되고 長期化할 수 있으며 또한 그 結果는 豫測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制度가 1981年 7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데 이것이 再審査制度(Reexamination)이다. 이 制度에 의하면 누구라도 언제나 書面에 의하여 特許클레임의 特許性에 關係가 있는 公知文獻 즉 特許文獻이나 刊行物을 特許廳에 提示하여(A 301) 클레임의 再審査를 請求할 수가 있다. 再審査의 請求가 있으면 特許의 記錄上의 所有者(the owner of record of the patent)에 請求書의 寫本이 送付되며 또한 特許廳長官은 請求日로부터 3個月內에 特許의 클레임의 特許性에 影響을 주는 새로운 問題가 提起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決定한다(A 303). 特許權者는 決定의 途達日로부터 2個月內에 意見書(statement)를 提出할 수가 있다.

再審査制度는 그 內容으로 미루어 再發行特許制度의 不足을 補完하는 한편 再發行特許와 더불어 特許廳에서 審査時檢討되지 않았던 無効理由를 다시 審査함에 의하여 特許의 信賴性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制度인 것이다.

### 2. 情報發生과 그 資料

特許賦與의 通知(Notice of Allowance)가 있었던 날로부터 3個月以內에 特許料(issue fee)를 納付하게 되면 約 2~3個月後 每週 火曜日에 發行되는 特許廳公報(Official Gazette)에 公示됨과 함께 特許明細書가 發行된다(表 33).